

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347
----------	------

2025. 10. 17.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30. 광양시장

나. 회부 일자: 2025. 9. 30. 회부

다. 상정 일자: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10. 17.) 상정,

“수정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목적,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(안 제1~3조)
-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(안 제4조)
-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(안 제5~6조)
-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 등 (안 제7조)
- 정책실명제 운영 실태점검 (안 제8조)

3. 검토 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맞으며, 정책집행 투명성 향상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.

※ 주요 변경내용

구 분	현행 규칙(폐지)	제정 조례안
위원회 구성	<p>-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<u>당연직위원은 투자경제과장, 안전과장, 보건행정과장,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.</u></p> <p>-<u>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50% 이상이어야 하며,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위원회의 기능은「<u>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</u>」에 따라 설치된 <u>“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”</u>가 대행한다.</p>
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.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3.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제정 사항 4.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.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. 다수 시민의 권리·의무·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.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.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.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5. 「<u>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</u>」 제63조의5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(국민신청실명제) 6.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수정의결(출석위원 6명)

※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붙임 1.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2.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
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347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0. 17.
제안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행정 강제 등 의무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적 효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.

2. 수정 내용

- 안 제8조제1항 중 “**점검할 수 있다.**”를 “**점검하여야 한다.**”로 수정함.

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 중 “**점검할 수 있다.**”를 “**점검하여야 한다.**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실태점검) ① 총괄관리부서 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상황 을 <u>점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8조(실태점검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점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(제정안+수정안)

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에 따라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책실명제”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·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·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.
2. “총괄관리부서”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.
3. “사업부서”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.
4. “중점관리 대상사업”이란 주요 시정 현안,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정책실명제 책임관) ①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·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.

-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
2.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실적 공개
3.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
4.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4조(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2.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
3.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
 - 나.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
 - 다.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
5.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

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
2.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「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)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작성하고,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

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,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, 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실태점검)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~~점검할 수 있다.~~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」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(제7조제1항 관련)

① 정책사업명			
② 추진배경			
③ 사업개요			
④ 사업부서		⑤ 담당자	
⑥ 선정기준		⑦ 사업기간	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	
○ 내용 ※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	'00.00.00	○○○ 시장 ○○○ 부시장 ○○○ 국소장 ○○○ 실단과장 ○○○ 팀장 ○○○ 주무관	
○ 내용	'00.00.00	○○○ 국소장 ○○○ 실단과장 ○○○ 팀장 ○○○ 주무관 <관련자> ○○○ 의원	

<기재항목>

- ① 정책사업명: 온-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
- ② 추진배경: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
- ③ 사업개요: 사업목적,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
- ④ 사업부서: 소속 기관명, 부서명(과 단위) 기재
- ⑤ 담당자: 現 사업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(직위)과 함께 기재
- ⑥ 선정기준: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/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/ 자치법규 개폐 / 국민신청 / 기타 中 택 1
- ⑦ 사업기간: 사업의 시작 및 (예상)종료 시점 기재
- ※ <그간 주요 추진내용>: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 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
- ※ 일시 및 관련자: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,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

[별지 제3호서식]

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(제4조제2항 관련)

신청인 (성명/성별)	
연 락 처	E-mail: 전화번호:
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	
신청사유	

※ 서식당 1건의 사업 신청 가능

※ 다수(공동명의) 신청 불가,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

[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]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
 -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.(상담·문의에 대한 답변 등)
 - 국민신청실명제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.
- 수집 항목: 이름, 생년월일, 연락처(휴대폰번호), 이메일 등
- 보유·이용 기간: 1년(기간 만료 후 보유 정보 폐기)
- 동의 거부 권리 안내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.

※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 □(체크)